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6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5가단79907 사해행위취소
원 고	[redacted]군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2015. 10. 23.
판 결 선 고	2015. 11.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과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1항 기재 부동산 중 100분의 45.4 지분에 관하여 2014. 6.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A은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순번 1항 기재 부동산 중 100분의 45.4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redacted]등기소 2014. 6. 23. 접수 제134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B과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1항 기재 부동산 중 100분의 27.6 지분 및 별지 목록 순번 2항 기재 부동산 중 100분의 73 지분에 관하여 2014. 6. 23.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6

각 취소한다. 피고 B은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순번 1항 기재 부동산 중 100분의 27.6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redacted]등기소 2014. 6. 23. 접수 제134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별지 목록 순번 2항 기재 부동산 중 100분의 73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6. 23. 접수 제134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97. 6. 17. [redacted] [redacted]구 D 부동산을 처분하였고, 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1998. 11. 16.경 C에게 납부기한을 1998. 11. 30.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11,049,840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C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C은 2014. 4. 28. 별지 목록 순번 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목록 순번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 중 100분의 73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2014. 6. 23. 피고 A에게 제1부동산 중 100분의 45.4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제1부동산 중 100분의 27.6 지분 및 제2부동산 중 100분의 73 지분에 관하여 각 2014. 6. 17.자 증여(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6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C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고지 후 체납세금의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도 이를 알았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C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의 C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03. 12. 1.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판단

원고의 C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그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고, 그 기산일은 납부기한인 1998. 11. 30.의 다음날이므로 시효중단사유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2003. 12. 1.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세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6

목 록

1. [redacted]시 [redacted]구 E 대 1,430㎡

2. [redacted]시 [redacted]구 F 도로 146㎡. 끝.